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8. 29.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577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자원순환과)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거품목을 추가하여 명확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구별로 재활용 가능 품목이 상이함으로써 인한 구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배출기준을 통일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형폐기물 수거 품목을 추가하여 명확한 수수료 부과기준 근거 마련(별표1)
- 환경부 지침과 우리구 재활용 분리배출품목 배출기준 통일 및 우리구 실정에 맞는 배출 요령으로 일부 재설정(별표2)
- 조문의 표현을 매끄럽게 하고, 현행 법률에 맞추어 조항 정비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7. 18. ~ 2025. 8. 7.) 중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I. 개요

-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을 환경부 지침과 통일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거 품목을 추가 및 추가 품목에 대한 수수료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먼저 개정 방식 등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개정 방식의 선택은 보통 개정하는 부분의 양, 중요도, 정비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통상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게 됨. 참고로 일부개정 방식으로 할 경우 자치법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기존 자치법규의 용어와 체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금번 제출된 개정안의 개정 범위는 현행 조례의 3분의 2 이상(아래 표 참고)이고, 단순 문구 수정 외에도 조문 순서 변경 및 재배치 등 개정 사항이 상당하고 복잡함. 이렇듯 개정 사항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 개정지시문 작성에서도 여러 오류(주요 사례: 안 제2조제8호 및 안 제3조 약칭 사용 관련, 안 제33조 및 안 제40조 관련)를 발견할 수 있었음. 부서에서는 향후 자치법규

입안 시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체계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이고 충분한 입법계획에 따라 전부개정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주요 개정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서울시 조례 및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상 자치구 조례 위임 근거 없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문구 삭제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문구 수정
	제3조(강남구의 책무)	- 조문 위치 변경(현행 제5조) 및 문구 수정
	제4조(구민의 책무)	- 조문 위치 변경(현행 제6조)
제3조(폐기물의 관할구역)	제5조(폐기물의 관할구역)	- 조문 위치 변경(현행 제3조) 및 문구 수정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6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 조문 위치 변경(현행 제4조) 및 문구 수정
제5조(강남구의 책무)		- 안 제3조로 이동
제6조(구민의 책무)		- 안 제4조로 이동
제7조(청결명령 이행)	제7조(청결명령 이행)	- 문구 수정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 문구 수정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 항 세분화 및 문구 수정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 문구 수정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하위 번호 없는 항 정비 및 문구 수정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 문구 수정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 문구 수정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및 배출방법)	- 조 제목 및 문구 수정
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 별표6 삭제에 따른 문구 수정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 사항)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 사항)	- 봉투판매인 준수사항 중 규격봉투 현금교환 삭제(제1항제5호)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해제)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해제)	- 문구 수정
제25조(폐기물처리업자의	제25조(규격봉투 공급금액	- 하위 번호 없는 항 정비 및

현행	개정안	주요 개정 사항
규격봉투 공급 및 대금의 징수 등)	및 대금의 징수)	조 전체 수정
제26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6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 문구 수정
제26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등)	제26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등)	- 문구 수정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 문구 수정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 문구 수정
제29조(매립지 반입수수료)	삭제	- 삭제
제31조(가산금 등)	제31조(가산금 등)	- 문구 수정
제32조(수수료의 감면)	제32조(수수료의 감면)	- 문구 수정
제33조(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	제33조(쓰레기봉투의 현금 교환)	- 항, 문구 수정
제35조(과태료의 부과 등)	삭제	- 삭제
제40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40조(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	- 조 제목 수정, 항 재배치, 문구 수정
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기준 등)	- 조 제목, 문구 수정
별표 1	별표 1	- 대행폐기물 수거 품목 추가
별표 2	별표 2	-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기준 정비
별표 6	삭제	- 삭제
별표 7	삭제	- 삭제

## II.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음에도 목적 규정에 이를 명시하고 있던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입안 기준상 책무에 관한 규정은 총칙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조문 순서를 재배치하고,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 안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는 기존 2개 항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4개 항으로 세분화한 것임.
- 규격 봉투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9조제2항 및 별표 6)

○ 현행 조례 별표 6에서는 규격 봉투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미 환경부 지침(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22)에 봉투의 높이, 너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특별히 규정할 실익이 없고, 기술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할 경우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  
 문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임.

□ 규격봉투 현금 교환 관련(안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33조)

○ 개정안에서는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규격봉투 현금교환 부분을 삭제(제23조  
 제1항제5호 삭제)하면서도 안 제3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에서 규격봉투의 현  
 금교환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시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 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 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u>규격봉투의 현금교환</u> 6. (생 략) ② (생 략)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 <u>종            량제</u>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 금교환을 <u>요청할 때에는 폐기물처리            업자는 이를 원 판매가격으로 교환하            여 주어야 한다.</u>	제3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u>구청장            은 종량제</u> ----- ----- ----- <u>요청하는 경우</u> --- ----- -----.

○ 그런데 환경부 지침(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22)에서는 봉투의 현금교  
 환은 판매소에서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연계하여 현재 강남구의 규  
 격봉투 환불 절차 및 방법(아래 표 참고), 개정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강남구 종량제봉투 환불 처리 관련]

○ 종량제봉투 환불 처리 절차



○ 2025년 상반기 종량제봉투 환불처리 현황

(기간 : 2025. 1. ~ 6. / 단위 : L, 매, 원, 원)

종 류	용 량	환불수량	환불봉투 단가	환불금액
가정용	5	151	130	19,630
	10	2,018	250	504,500
	20	914	490	447,860
	30	36	740	26,640
	50	11	1,250	13,750
영업용	20	260	520	135,200
	30	-	780	-
	50	633	1,330	841,890
	75	2,609	2,000	5,218,000
	100	716	2,680	1,918,880
재사용	10	72	250	18,000
	20	131	490	64,190
태워서 안되는 쓰레기봉투	10	-	410	-
	20	83	640	53,120
	50	116	1,400	162,400
<b>합 계</b>		<b>7,750</b>	<b>13,360</b>	<b>9,424,060</b>

(자료: 자원순환과)

- 참고로 타 지자체 조례에는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에 규격봉투 현금교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도 판매소에서 현금교환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음.
- 한편,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안 제33조의 개정지시문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음.

[안 제33조의 개정지시문]

제3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종량제”를 “구청장은 종량제”로, “요청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는”을 “요청하는 경우”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상 현행 조례 제33조]

- 제3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원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3. 7. 25., 2009.11.06.>
- ② <삭제 99-11-5>
- ③ <삭제 99-11-5>
- ④ <삭제 99-11-5>

안 제33조 개정지시문의 취지는 현행 제33조에 하나만 남은 항을 본문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 경우에는 기존에 삭제된 항이 연혁상 삭제된 형태로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조를 전부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지시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 전부개정 시 개정지시문 예시는 아래 표와 같음.

[조 전부개정 시 개정지시문 예시]

제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0조( ) -----  
-----.

- 이에 안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33조는 환경부 지침 및 타 지자체 조례 현황, 강남구 운영 현실 등을 참고하여 수정 논의가 필요해 보임. 또한 수정 시 제33조를 전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지시문을 작성해야 할 것이고, 조 제목 역시 “(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으로 변경하여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매립지 반입수수료 관련 사항 삭제(제29조 및 별표 7 삭제)

- 현행 조례 제29조(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별표 7(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지 반입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그런데 현행 조례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1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부서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위탁 처리함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삭제한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하고 있음. 그렇다면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반입수수료 관련 사항을 조례에 존치 시킬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강남구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 시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40조(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 및 안 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기준 등) 관련
  - 안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 사항은 결과적으로 단순 문구 수정임. 그러나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 안 제40조의 개정지시문과 조문대비표가 매우 복잡하여 개정 의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자칫 입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임.
  - 더욱이 법제처 입안기준에서는 “일부개정 시 개정지시문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을 인용하여 개정하되, 하나의 조·항·호 중 여러 곳을 개정·추가 또는 삭제하여 개정문이 매우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항·호의 전부를 개정한다” 고 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작성 시 이러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임.

**[안 제40조의 개정지시문]**

제40조의 제목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



현 행	개 정 안
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은 <u>별표9</u> 와 따른다.	----- ----- <u>별표 9</u> 를 -----.

- 뿐만 아니라 안 제40조(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 및 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기준 등)의 경우 조 제목을 변경하였는데 같은 단어의 띄어쓰기가 각기 다름.
- 또한 안 제40조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제41조제1항의 정비 조치를 누락한 것으로 보임. 즉, 현행 조례 제40조제1항에서는 무단투기행위의 신고와 포상금 지급 근거를 함께 명시하고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제40조제1항에 무단투기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포상금 지급 근거를 구분하여 명시하였음. 그런데 현행 조례 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제1항에서는 제40조제1항을 인용(“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내역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수정이 필요함에도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기준 등) ① <u>제40조제1항</u> 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내역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은 <u>별표 9</u> 를 따른다.	제41조(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 기준 등) ① <u>제40조</u> 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내역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은 <u>별표9</u> 를 따른다.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거 품목 추가 및 추가 품목 수수료 명시(안 별표 1)

- 안 별표 1은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대형폐기물 품목을 추가(뚝자리, 조명기구 등 21개 품목)하고 추가 품목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한 것으로 원활한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금번 추가 품목에 대한 수수료 산정 기준 설명이 요구되며(타 지자체 수수료 부과기준 붙임 자료 참고),

경미한 수정 사항으로 안 별표 1에서 추가된 품목에 대해 “기타생활용품(추가)” 라는 표현을 두었으나 “(추가)” 는 불필요한 단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생활용품 (추가)</td> </tr> </table>	종류	기타생활용품 (추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생활용품</td> </tr> </table>	종류	기타생활용품
종류					
기타생활용품 (추가)					
종류					
기타생활용품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정비(안 별표 2)

○ 현행 우리구 조례상 고무장갑은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환경부 훈령(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과 서울시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고무장갑 재활용 가능 여부’ 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이에 안 별표 1에서는 환경부 지침에 맞춰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과 분리배출요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무장갑 배출 관련]

현행 조례	개정안	환경부	서울시
재활용가능 품목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

○ 개정안은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 훈령과 동일함으로써 주민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나, 금번에 문제가 되었던 고무장갑의 경우 지난 2018. 8. 13. 환경부 훈령(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부터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더욱이 쓰레기 배출 및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은 구민 실생활에 매우 밀접한 사항이고, 재활용 촉진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가급적 통일된 기준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이러한 부분을 정비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임.

□ 기타 수정 논의가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약칭 관련(안 제2조제8호, 안 제3조 연계)

현행 조례 제2조제8호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구청장” 으로 약칭하였

으나, 개정안에서 해당 약칭이 삭제됨.

“구청장”은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안 제2조제8호에서 삭제한 구청장 약칭을 해당 용어가 처음 나오는 조문인 안 제3조에서 다시 규정해야 함.

- 안 제5조제3항 후단 신설 관련 전단 서술어 수정 필요
- 안 제11조의2 입법례에 맞춰 조사 수정 필요
- 안 제17조제2항 불필요한 문장 부호 삭제 필요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강남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강남구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관할구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 ----- 서울특별시시장(이하 ----- ----- -----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 <u>있고</u> , 이 경우 시장의 조정·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관할구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 ----- 서울특별시시장(이하 ----- ----- -----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 <u>있다</u> . 이 경우 시장의 조정·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 ----- ----- -----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 ----- ----- -----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

개 정 안	수 정 의 견
항제3호 단서의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제3호 단서에서 <sup>1)</sup>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및 배출방법) ② ----- ----- ----- 재사용봉투에, ----- ----- ----- -----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및 배출방법) ② ----- ----- ----- 재사용봉투에 ----- ----- ----- -----

### Ⅲ.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그동안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 방법이 환경부 훈령과 달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수거 품목 추가 및 관련 수수료 근거 마련을 통해 원활한 폐기물 배출과 수거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개정 취지는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자원의 재활용과 생활쓰레기의 적정 배출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 조례와 환경부 지침과의 불일치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 덧붙여, 앞서 살펴보았듯 본 건의 경우 일부개정임에도 개정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 다수의 오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단순한 문구 수정이나 기존 조문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의 사항은 특별한 개정 실익이 없고 개정 연혁과 조례 체계만 복잡하게 할 뿐임. 필요하다면 면밀한 입법계획을 세워 전부개정하는게 바람직했을 것인바 자치법규 입안 시 형식 및 내용 검토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

1) 입법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77호

제안일자 : 2025.8.29.

제 안 자 : 복지문화위원장

## 1. 수정이유

-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수정 및 정비하고자 함

## 2. 수정주요내용

- 조문 내용 수정 및 정비(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11조의2, 안 제17조, 안 제41조, 안 별표 1)
- 환경부 지침 및 강남구 운영 현실 등을 반영하여 내용 수정(안 제3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전단 중 “있고,”를 “있다.”로 한다.

안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서의 의한”을 “단서에서”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 중 “재사용봉투에,”를 “재사용봉투에”로 한다.

안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 구청장은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  
로 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원 판매  
가격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안 제40조제1항 중 “정확히 적어”를 “적어”로 한다.

안 제41조의 제목 “(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기준 등)”을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  
상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제1항”을 “제40조”로 한다.

안 별표 1 중 “기타생활용품(추가)”를 “기타생활용품”으로 한다.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건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의 조정·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  
-----  
- 따라 ---- 강남구의  
회에 그 사실을 통보--  
-----.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

③ -----  
-----  
-----  
-----  
----- 있다.  
-----  
-----  
-----.

④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등) -----  
-----  
-----  
-----  
-----

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생략)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중 가정폐기물은 가정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 생활폐기물중 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영업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제3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의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및 배출방법) ① (생략)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중 가정폐기물은 가정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 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영업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제3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구청장은 종량제 -----  
-----  
-----  
-- 요청하는 경우 ----  
-----

----- . -----  
----- 단  
서에서 -----  
-----  
----- .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및 배출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재사용봉투에  
-----  
----- .

제33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 구청장은 종량제 -----  
-----  
-----  
-- 요청하는 경우 ----  
-----



액은 별표9와 따른다.

별표 1

종류
<u>기타생활용품</u>

기준 및 금액은 별표 9  
를 따른다.

별표 1

종류
<u>기타생활용품</u> (추가)

별표 1

종류
<u>기타생활용품</u>

## 강남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같은 조례”를 “법”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을 “정한”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법 제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제2항 중 “제1항”을 “구청장은 제1항”으로, “해당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를 “구청장은 제2항에”로,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이하”를 “서울특별시시장(이하”로, “조정을”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로,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의 조정·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제4항 중 “제2항”을 “구청장은 제2항”으로, “따른”을 “따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통보”를 “강남구의회에 그 사실을 통보”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치구에”를 “자치구청장에”로,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를 “있고, 다른 자치구청장으로부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폐기물은”을 “폐기물을”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대형폐기물 :”을 “대형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생활폐기물 :”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을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는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해야 하고,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하여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6조의 규

정”을 “제26조”로, “입찰을 할 때”를 “입찰에서”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차례에”를 “차례로”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을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를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대행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근로자”로,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를 “부적정하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규격봉투”를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규격봉투”로,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규격봉투의 종류)”를 “(규격봉투의 종류 및 배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사용봉투에, 생활폐기물중”을 “재사용봉투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물중 구청장이 정한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를 “폐기물 중 구청장이 정한”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표 6과 같이 표시”를 “표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적출하였을 때에는”을 “적발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즉시”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한 경우”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규격봉투 공급금액 및 대금의 징수) 폐기물처리업자가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공급금액은 규격봉투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따른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을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형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대형폐기물”로, “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한다”로 한다.

제27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종량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폐기물”을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1조 중 “아니할 때에는”을 “않은 경우”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거나”를 “제2항을 따르거나”로 한다.

안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 구청장은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원 판매

가격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 앞의 “제5장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삭제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40조의 제목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전단 중 “무단투기에”를 “구청장은 무단투기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① 무단투기행위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 8호서식에 따라 무단투기행위인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적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 제목 “(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을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제1항”을 “제40조”로, “별표9와”를 “별표 9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 미 처분한”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으로 한다.

별표 1,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가구류	장롱	100cm이상 1쪽	15,000	가구류	의자	1인용	2,000	
		100cm미만 1쪽	10,000			장의자	3,000	
	비키니 옷장	모든 규격				2,000	바퀴달린의자(대형)	5,000
		장식장	100cm 이상			9,000	바퀴달린의자(일반)	4,000
	100cm 미만		6,000		화장대	모든규격		5,000
	문갑	100cm 이상	4,000			신발장	1m이상	5,000
		100cm 미만	2,000		1m미만		2,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4단 이하	3,000			다림이판	모든 규격	
	쇼파	4인용 이상	10,000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3,000
		3인용	7,000		TV 받침	모든 규격		3,000
		2인용	5,000			밥상	4인 이상	2,000
		1인용	3,000		3인 이하		1,000	
	식탁(테이블)	4인용 이상	5,000		진열대	모든 규격		3,000
		3인용 이하	2,000			차탁자	모든 규격	
		5인용 이상(대리석)	12,000		창문 짝		모든규격	
		4인용 이하(대리석)	8,000			문 짝	목재류	
	싱크대	60cm 1쪽당	3,000		회의용 탁자		12인용 이상	9,000
		책상	양수책상			7,000	8인용 이상	7,000
	편수책상		4,000			8인용 미만	5,000	
	컴퓨터용 책상, 서랍없음		3,000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700 L 이상)	15,000	
	책장	100cm 이상	8,000			양문형 냉장고(600 L 이상)	12,000	
		100cm 미만	5,000			500 L 이상	8,000	
	책꽂이	4단 이하	4,000			300 L 이상	6,000	
		2단 이하	2,000			300 L 미만	4,000	
	침대	2인용 세트 (매트리스1개+틀)	15,000		김치냉장고	130 L 이상	5,000	
		1인용 세트 (매트리스1개+틀)	10,000			130 L 미만	3,000	
		2인용(매트리스)	8,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7,000	
		1인용(매트리스)	5,000			25인치 이상	5,000	
		2인용(틀)	7,000			25인치 미만	3,000	
1인용(틀)		5,000	TV받침일체형(40인치 미만)	7,000				
유아용 침대		3,000	세탁기	10kg 이상	5,000			
어린이 2층 침대		20,000		10kg 미만	3,000			
2인용 돌침대 세트		30,000						
1인용 돌침대 세트		25,000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가전 제품류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5,000	기타 생활용품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오디오	본체(높이 1m 이상)	5,000		욕조	일반용		5,000
		스피커(높이 1m 이상)	1,000			유아용		3,000
	에어컨	264㎡이상	8,000		유리 (거울,판유리)	1㎡당		2,000
		66㎡이상	5,000			기타 목재	5kg 당	
		66㎡미만	3,000		기타 프라스틱류		5kg 당	
	온풍기	264㎡이상	8,000			화분	높이 50cm이상	
		66㎡이상	5,000		높이 50cm미만			1,000
		66㎡미만	3,000		유모차(보행기)	모든규격		3,000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5,000		인형,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		2,000
	난로	석유난로	3,000			소형(3kg당)		1,000
	정수기	높이 1m이상	5,000		자전거	성인용		3,000
	보일러	16,000cal/h이상	12,000			아동용(2륜)		3,000
		16,000cal/h미만	8,000			아동용(3륜)		2,000
	자동판매기	음료, 담배 등	15,000		항아리	100 L 이상(대형)		5,000
자가, 소형		3,000	100 L 미만(중형)			3,000		
선풍기	업소용(대형)	3,000	30 L 미만(소형)			2,000		
	환풍기	업소용	3,000	가방류	골프 가방		3,000	
가정용		2,000	가로 50cm 이상			3,000		
기타 생활용품	피아노	일반	15,000		가로 50cm 미만		2,000	
		디지털 (오르간 포함)	5,000	쓰레기통	사무실용, 옥외용		2,000	
	쌀통	모든규격	3,000		가정용		1,000	
	액자	높이 1m이상	3,000	목욕탕 수건함	모든 규격		1,000	
		높이 50cm~1m	2,000		재봉틀	모든 규격		2,000
		높이 50cm 미만	1,000	고무통		지름100cm이상		5,000
	시계	높이 1m이상	3,000		지름50cm이상		3,000	
	장판	3.3㎡당	2,000		지름50cm미만		2,000	
	카펫트	3.3㎡당	2,000	병풍	2폭당		1,000	
	이불	모든규격	2,000		러닝머신	모든 규격	10,000	
	캐비닛	모든규격	4,000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화일캐비닛	4단 이상	4,000	옥매트	2인용		7,000	
		4단 미만	3,000		1인용		4,000	
	어항	2m 이상	9,000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1m 이상	5,000	아이스박스	대형		2,000	
1m 미만		3,000	소형			1,000		
변기	양변기		8,000	스키	모든 규격	2,000		
				보드	모든 규격	2,000		
	좌변기		5,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20,000		
				소화기	3.3kg이하		1,000	
					3.3kg~5kg		2,000	
		5kg~10kg			3,000			
		10kg~15kg			4,000			
			15kg이상		5,000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기타 생활 용품	돛자리 (대자리, 놀이매트)	1㎡당	1,000	기타 생활 용품	파티션	1㎡당	2,000
	도마	업소용 나무도마	2,000		게시판 (화이트보드)	가장 긴면 1m이상	2,000
		가정용 나무도마	1,000			가장 긴면 1m미만	1,000
	마네킹	1m 이상	5,000		화환	모든규격	3,000
		1m 미만	3,000		컬러박스 (공간박스)	2단 이하	1,000
	방석	모든규격	1,000			3단 이상	2,000
					커튼봉	모든규격	2,000
	블라인드	1㎡당	2,000			커튼	2m 이상
					2m 미만		1,000
	비데	모든규격	1,000		행거	2단 행거	3,000
						1단 행거	2,000
	토퍼	1인용	3,000		카시트	모든규격	2,000
		2인용	5,000		세단기 (종이세질)	모든 규격	4,000
	헬스기구	헬스자전거	7,000		캣타워	높이 1.5m 이상	6,000
스텝퍼		4,000	높이 1.5m 미만	4,000			
			강아지집	1m 당	2,000		
			조명기구	상드레아	2,000		
				폭, 높이 1m 이상	2,000		
				폭, 높이 1m 미만	1,000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16조제3항 관련)**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li> <li>-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li> </ul> <p>※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p>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li> <li>-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li> <li>-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li> </ul> <p>※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p>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li> <li>-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li> </ul>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li> </ul>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종이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li> <li>※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li> <li>-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li> <li>※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물로 헹군 후 반납</li> </ul>
	· 기타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li> <li>※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li> </ul>
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li> <li>-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li> <li>-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li> <li>- 소주, 맥주 등 반응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li> <li>※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li> </ul>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4.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 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ul> <p>※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p>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li> </ul> <p>※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p> <p>※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p> <p>※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p> <p>※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p>
5.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li> <li>-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li> </ul> <p>※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p>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 · 트레이류</li> <li>· PVC, PE, PP, PS, 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li> <li>- 부착상표, 부착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li> <li>※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li> </ul>
7. 합성수지 비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li> <li>※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sup>2</sup>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li> <li>※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 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li> </ul>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8.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li> </ul> <p>※ 해당 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p> <p>※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p>
9. 의류 및 원단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의류</li> <li>· 기타 의류</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성 섬유(면, 마 등)</li> <li>·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li> <li>·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li> <li>· 기타 합성섬유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li> </ul> <p>※ 비해당 품목 : 솜이불, 베개, 쿠션,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 재사용불가능한 헌옷·헌신발·헌가방 등</p>
10.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li> <li>-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루트를 통하여 배출</li> <li>-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li> </ul>
11.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거점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li> </ul> <p>※ 비해당 품목 : 깨진 형광등, 깨진 LED 조명 등</p>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12.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13. 식용유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전용수거함에 배출

※ 품목별 비해당 품목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등 적합한 방법으로 배출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법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8. “재활용가능품 “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9.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정한 ----- ----- -----.</p> <p>9. (현행과 같음)</p>
<p>제3조(폐기물의 관할구역)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p>	<p>제5조(폐기물의 관할구역)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제1항</u>----- ----- ----- ----- ----- ----- ----- <u>자치구청장</u>-----</p>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관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인근 자치구에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  
----- 서울특별시(이하 -----  
----- 하 -----  
----- 법 제4조제2항에  
----- 따른 조정을 ----- 있  
다. 이 경우 시장의 조정·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  
----- 따라 ----- 강남  
구의회에 그 사실을 통보-----  
-----.

제6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  
-----  
-----  
-----  
----- 자치구  
청장에 -----  
----- 있고, 다른 자치구청장으로부터 -----  
-----.

제5조(강남구의 책무) ① 구청장  
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  
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  
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  
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생략)

제7조(청결명령 이행) ① (생  
략)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  
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한 폐기  
물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  
다.

③ (생략)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  
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  
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

제3조(강남구의 책무) ① 서울특  
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청결명령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폐기물 -----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등) ①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 : 배출 3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 규격 및 품목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별표 10에서 정한 품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생략)

3. 공사장 생활폐기물 :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보관장소나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4.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

-----  
-----  
-----.

1. 대형폐기물: -----  
-----  
-----  
-----.  
-----  
-----  
-----  
-----.

2. (현행과 같음)

3. ----- 생활폐기물: -----  
-----  
-----  
-----.  
-----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  
-----.

4.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  
-----



<신 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 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 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 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라 한다)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별표 5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 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 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업체와 계약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로 정한다.

④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 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  
-----  
-----  
-----  
-----  
----- 하여금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  
행규칙” 이라 한다) 제14조---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  
----- 제26  
조----- 입찰  
에서 ----- 않거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 6. (생략)

⑤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은 업체당 연속 두 차례에 한정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

2. ~ 6. (현행과 같음)

⑤ -----  
-----.  
-----  
-----  
-----  
-----  
--- 차례로 -----.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  
-----  
-----  
-----  
-----  
-----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  
-----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1.·2. (생략)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략)

②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생략)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중 가정폐기물은 가정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 생활폐기물중 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영업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 대행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근로자-----  
----- 부적정하게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규격봉투--- 생활폐기물-----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및 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재사용봉투에 ----  
-----  
-----.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구청장이 정한 강남자원 회수시설에서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담는다.

④ (생략)

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별표 6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6. (생략)

② (생략)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

③ ----- 폐기물 중 구청장이 정한 -----  
-----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표시 -----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  
----- 적출 -----  
발한 경우 -----

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자의 규격봉투 공급 및 대금의 징수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규격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공급 대금의 징수방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르며 공급금액은 규격봉투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정용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생략)

② (생략)

제26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한 경우 -----.

제25조(규격봉투 공급금액 및 대금의 징수) 폐기물처리업자가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공급금액은 규격봉투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따른다.

제26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  
-----.

1. -----  
-----  
않는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등) ①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대상자는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②·③ (생략)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는 강남구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 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9조(매립지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구청장이 폐기물 배출자로 부터 징수하는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1조(가산금 등) 제30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납부 등) ① -----  
-----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대형폐기  
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  
-----  
---. 다만, 종량제 -----  
-----  
-----.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 수수료) ① -----  
-----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31조(가산금 등) -----  
-----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기 당시의 강남구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  
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  
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  
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대상  
폐기물은 종량제 폐기물에 한정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 3.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  
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  
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항의

----- 않은 경우 -----  
-----  
-----  
-----  
-----  
-----  
-----  
-----  
-----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  
----- 사람 또  
는 지역-----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1호-----

2.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  
-----  
-----  
-----  
-----  
-----  
-----

③ -----  
----- 제2항을 따르

규정을 적용하거나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원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신 설>

제5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5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구

청장이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 기간은 부과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조 전부개정 2016. 03.11.]

제40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

거나 -----  
-----  
-----.

제33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①

구청장은 종량제 -----  
-----  
----- 요청하는  
경우 -----  
-----.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제40조(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

상금 지급) <신 설>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무단투기행위인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행위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강남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내역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은 별표9와 따른다.

②·③ (생략)

상) ① 무단투기행위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무단투기행위인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적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단투기에 -----  
-----  
-----  
-----. <후단 삭제>

<삭 제>

제41조(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

기준 등) ① 제40조-----  
-----  
-----  
----- 별표 9를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미 처분한 사항

④ -----  
-----  
----- 않는다.

1. ~ 3. (현행과 같음)

4.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7
----------	-----

제출연월일 : 2025. 8. 1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자원순환과

## 1. 제안이유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거품목을 추가하여 명확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자치구별로 재활용 가능 품목이 상이함으로 인한 구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배출 기준을 통일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 수거 품목을 추가하여 명확한 수수료 부과기준 근거 마련(별표1)

나. 환경부 지침과 우리구 재활용 분리배출품목 배출기준 통일 및 우리구 실정에 맞는 배출 요령으로 일부 재설정(별표2)

다. 조문의 표현을 매끄럽게 하고, 현행 법률에 맞추어 조항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7. 18. ~ 2025. 8. 7.) 중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같은 조례”를 “법”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을 “정한”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법 제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제2항 중 “제1항”을 “구청장은 제1항”으로, “해당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를 “구청장은 제2항에”로,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이하”를 “서울특별시시장(이하”로, “조정을”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로,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를 “있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의 조정·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제4항 중 “제2항”을 “구청장은 제2항”으로, “따른”을 “따라”

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통보”를 “강남구의회에 그 사실을 통보”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치구에”를 “자치구청장에”로, “있으며”를 “있고”로, “다른 자치구로부터”를 “다른 자치구청장으로부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폐기물은”을 “폐기물을”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대형폐기물 :”을 “대형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생활폐기물 :”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을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는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해야 하고,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하여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6조의 규정”을 “제26조”로, “입찰을 할 때”를 “입찰에서”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차례에”를 “차례로”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를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의”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를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대행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근로자”로,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를 “부적정하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규격봉투”를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규격봉투”로,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규격봉투의 종류)”를 “(규격봉투의 종류 및 배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사용봉투에, 생활폐기물중”을 “재사용봉투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기물중 구청장이 정한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를 “폐기물 중 구청장이 정한”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표 6과 같이 표시”를 “표시”로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적출하였을 때에는”을 “적발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즉시”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한 경우”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규격봉투 공급금액 및 대금의 징수) 폐기물처리업자가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공급금액은 규격봉투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따른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을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형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대형폐기물”로, “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한다”로 한다.

제27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종량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폐기물”을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1조 중 “아니할 때에는”을 “않은 경우”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거나”를 “제2항을 따르거나”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종량제”를 “구청장은 종량제”로, “요청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는”을 “요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5장(제35조)을 삭제한다.

제40조의 제목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전단 중 “무단투기에”를 “구청장은 무단투기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 ① 무단투기행위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 8호서식에 따라 무단투기행위인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히 적어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 제목 “(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을 “(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9와”를 “별표 9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 미 처분한”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으로 한다.

별표 1,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가구류	장롱	100cm이상 1쪽	15,000	가구류	의자	1인용	2,000
		100cm미만 1쪽	10,000			장의자	3,000
	비키니 옷장	모든 규격	2,000			바퀴달린의자(대형)	5,000
	장식장	100cm 이상	9,000			바퀴달린의자(일반)	4,000
		100cm 미만	6,000		화장대	모든규격	5,000
	문갑	100cm 이상	4,000			신발장	1m이상
		100cm 미만	2,000		1m미만		2,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4단 이하	3,000			다림이판	모든 규격
	쇼파	4인용 이상	10,000		오디오장식장	모든 규격	3,000
		3인용	7,000		TV 받침	모든 규격	3,000
		2인용	5,000			밥상	4인 이상
		1인용	3,000		3인 이하		1,000
	식탁(테이블)	4인용 이상	5,000		진열대	모든 규격	3,000
		3인용 이하	2,000			차탁자	모든 규격
		5인용 이상(대리석)	12,000		창문 짝		모든규격
		4인용 이하(대리석)	8,000			문 짝	목재류
	싱크대	60cm 1쪽당	3,000		회의용 탁자		12인용 이상
		책상	양수책상			7,000	8인용 이상
	편수책상		4,000			8인용 미만	5,000
	컴퓨터용 책상, 서랍없음		3,000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700 L 이상)	15,000
	책장	100cm 이상	8,000			양문형 냉장고(600 L 이상)	12,000
		100cm 미만	5,000			500 L 이상	8,000
	책꽂이	4단 이하	4,000			300 L 이상	6,000
		2단 이하	2,000			300 L 미만	4,000
	침대	2인용 세트 (매트리스1개+틀)	15,000		김치냉장고	130 L 이상	5,000
		1인용 세트 (매트리스1개+틀)	10,000			130 L 미만	3,000
		2인용(매트리스)	8,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7,000
1인용(매트리스)		5,000	25인치 이상	5,000			
2인용(틀)		7,000	25인치 미만	3,000			
1인용(틀)		5,000	TV받침일체형(40인치 미만)	7,000			
유아용 침대		3,000	세탁기	10kg 이상	5,000		
어린이 2층 침대		20,000		10kg 미만	3,000		
2인용 돌침대 세트		30,000					
1인용 돌침대 세트		25,000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가전제품류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5,000	기타생활용품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오디오	본체(높이 1m 이상)	5,000		욕조	일반용		5,000
		스피커(높이 1m 이상)	1,000			유아용		3,000
	에어컨	264㎡이상	8,000		유리(거울,판유리)	1㎡당		2,000
		66㎡이상	5,000		기타 목재	5kg 당		2,000
		66㎡미만	3,000		기타 플라스틱류	5kg 당		2,000
	온풍기	264㎡이상	8,000		화분	높이 50cm이상		2,000
		66㎡이상	5,000			높이 50cm미만		1,000
		66㎡미만	3,000		유모차(보행기)	모든규격		3,000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5,000		인형,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 놀이 집 등)		2,000
	난로	석유난로	3,000			소형(3kg당)		1,000
	정수기	높이 1m이상	5,000		자전거	성인용		3,000
	보일러	16,000cal/h이상	12,000			아동용(2륜)		3,000
		16,000cal/h미만	8,000			아동용(3륜)		2,000
	자동판매기	음료, 담배 등	15,000		항아리	100 L 이상(대형)		5,000
자가, 소형		3,000	100 L 미만(중형)			3,000		
선풍기	업소용(대형)	3,000	30 L 미만(소형)			2,000		
	환풍기	업소용	3,000	가방류	골프 가방		3,000	
가정용		2,000	가로 50cm 이상			3,000		
피아노	일반	15,000	가로 50cm 미만			2,000		
	디지털(오르간 포함)	5,000	쓰레기통	사무실용, 옥외용		2,000		
쌀통	모든규격	3,000		가정용		1,000		
	액자	높이 1m이상	3,000	목욕탕 수건함	모든 규격		1,000	
		높이 50cm~1m	2,000		재봉틀	모든 규격		2,000
높이 50cm 미만		1,000	고무통	지름100cm이상			5,000	
시계	높이 1m이상	3,000		지름50cm이상		3,000		
장판	3.3㎡당	2,000		지름50cm미만		2,000		
카펫	3.3㎡당	2,000	병풍	2폭당		1,000		
이불	모든규격	2,000		러닝머신	모든 규격		10,000	
캐비닛	모든규격	4,000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화일캐비닛	4단 이상	4,000	옥매트	2인용		7,000		
	4단 미만	3,000		1인용		4,000		
어항	2m 이상	9,000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1m 이상	5,000	아이스박스	대형		2,000		
	1m 미만	3,000		소형		1,000		
번기	양변기		8,000	스키	모든 규격		2,000	
		좌변기		5,000	보드	모든 규격		2,000
	소화기	3.3kg이하		1,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20,000
		3.3kg~5kg		2,000				
		5kg~10kg		3,000				
10kg~15kg		4,000						
15kg이상		5,000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기 타 생 활 용 품 ( 추 가)	돛자리 (대자리, 놀이매트)	1㎡당	1,000	기 타 생 활 용 품 ( 추 가)	파티션	1㎡당	2,000
	도마	업소용 나무도마	2,000		게시판 (화이트보드)	가장 긴면 1m이상	2,000
		가정용 나무도마	1,000			가장 긴면 1m미만	1,000
	마네킹	1m 이상	5,000		화환	모든규격	3,000
		1m 미만	3,000		컬러박스 (공간박스)	2단 이하	1,000
	방석	모든규격	1,000			3단 이상	2,000
					블라인드	1㎡당	2,000
	비데	모든규격	1,000				
					토퍼	1인용	3,000
	2인용	5,000	1단 행거			2,000	
	헬스기구	헬스자전거	7,000		카시트	모든규격	2,000
		스텝퍼	4,000		세단기 (종이세절)	모든 규격	4,000
					캐타워	높이 1.5m 이상	6,000
				높이 1.5m 미만	4,000		
			강아지집	1m 당	2,000		
			조명기구	상드레아	2,000		
				폭, 높이 1m 이상	2,000		
				폭, 높이 1m 미만	1,000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16조제3항 관련)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li> <li>-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li> </ul> <p>※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p>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li> <li>-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li> <li>-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li> </ul> <p>※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p>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li> <li>-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li> </ul>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li> </ul>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종이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li> <li>※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li> <li>-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 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li> <li>※ 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물로 행군 후 반납</li> </ul>
	· 기타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li> <li>※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li> </ul>
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li> <li>-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li> <li>-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li> <li>-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li> <li>※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li> </ul>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4.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ul> <p>※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p>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li> </ul> <p>※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p> <p>※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p> <p>※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p> <p>※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p>
5.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병	·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li> <li>-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li> </ul> <p>※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p>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 · 트레이류</li> <li>·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li> <li>- 부착상표, 부착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li> <li>※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li> </ul>
7. 합성수지 비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li> <li>※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sup>2</sup>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li> <li>※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 (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li> </ul>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8. 발포 합성 수지	· 스티로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li> </ul> <p>※ 해당 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p> <p>※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p>
9. 의류 및 원단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의류</li> <li>· 기타 의류</li> <li>· 식물성 섬유(면, 마 등)</li> <li>·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li> <li>·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li> <li>· 기타 합성섬유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li> </ul> <p>※ 비해당 품목 : 솜이불, 베개, 쿠션,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 재사용불가능한 헌옷·헌신발·헌가방 등</p>
10. 전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은전지, 산화은 전지, 니켈 ·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li> <li>-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루트를 통하여 배출</li> <li>-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li> </ul>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11.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깨진 형광등, 깨진 LED 조명 등
12.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13. 식용유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전용수거함에 배출

※ 품목별 비해당 품목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등 적합한 방법으로 배출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법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8. “재활용가능품 “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9.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정한 ----- ----- -----.</p> <p>9. (현행과 같음)</p>
<p>제3조(폐기물의 관할구역)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p>	<p>제5조(폐기물의 관할구역)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제1항----- ----- ----- ----- ----- ----- 자치구청장-----</p>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관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인근 자치구에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  
----- 서울특별시장(이하 -----  
-----  
-----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 있고, 이 경우 시장의 조정·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  
----- 따라 ----- 강남구의회에 그 사실을 통보-----  
-----.

제6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  
-----  
-----  
----- 자치구청장에 -----  
----- 있고-- 다른 자치구청장으로부터 -----  
-----.

제5조(강남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생략)

제7조(청결명령 이행) ① (생략)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제3조(강남구의 책무) ① -----

-----  
-----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청결명령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폐기물  
을 -----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 -----

-----  
-----  
-----  
-----  
-----  
-----



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 규칙-----  
-----.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  
-----  
-----  
----- 설치해야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하는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건설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해야 하고,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별표 5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6.03.11.>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업체와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  
-----  
-----  
-----  
-----  
----- 하여금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  
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1. -----  
----- 제26  
조----- 입찰  
에서 ----- 않거  
나 -----

2. ~ 6. (생략)

⑤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은 업체당 연속 두 차례에 한정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2. (생략)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2. ~ 6. (현행과 같음)

⑤ -----  
-----.  
-----  
-----  
-----  
-----  
-----  
차례로 -----.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  
-----  
-----  
-----.  
-----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의 -----  
-----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등) ① -----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1.·2. (현행과 같음)

② ----- 대행계약

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  
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략)

②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태  
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와 음식  
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은 별도  
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생략)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  
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중 가정  
폐기물은 가정용봉투와 재사용  
봉투에, 생활폐기물중 가정폐  
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영업용봉  
투에 담아 배출한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  
기물중 구청장이 정한 강남자원

서의 내용과 달리 근로자-----

----- 부적정하게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규  
격봉투--- 생활폐기물-----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규격봉투의 종류 및 배출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재사용봉투에, ---

-----

-----.

③ ----- 폐기

물 중 구청장이 정한 -----

회수시설에서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담는다.

④ (생략)

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  
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  
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  
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별  
표 6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  
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6. (생략)

② (생략)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3조제1항 각 호  
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  
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  
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현  
행과 같음)

② -----  
-----  
-----  
-----  
----- 표시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  
-----  
--- 적발한 경우 ---  
-----  
-----.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자의 규격봉투 공급 및 대금의 징수 등) ① 폐기물처리업자가 규격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공급 대금의 징수방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르며 공급금액은 규격봉투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정용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생략)

② (생략)

제26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등) ①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대상자는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한 경우 -----.

제25조(규격봉투 공급금액 및 대금의 징수) 폐기물처리업자가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공급금액은 규격봉투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공급대금의 징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따른다.

제26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

1. -----  
않는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 등) ① -----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략)
- ②·③ (생략)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는 강남구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 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략)

제29조(매립지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구청장이 폐기물 배출자로 부터 징수하는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1조(가산금 등) 제30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 당시의 강남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대형폐기물----- 한다.

- 1.·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  
-----  
----. 다만, 종량제 -----  
-----  
-----.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 수수료) ① -----  
-----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31조(가산금 등) -----  
-----  
----- 않은 경우 -----  
-----

일반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대상 폐기물은 종량제 폐기물에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2. · 3.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  
-----  
-----  
-----.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  
----- 사람 또는 지역-----.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2.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  
-----  
-----.  
-----  
-----.

③ -----  
----- 제2항을  
따르거나 -----  
-----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를 원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5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5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구

청장이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 기간은 부과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조 전부개정 2016. 03.11]

제40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

-----.

제33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구청장은 종량제 -----  
-----  
----- 요청하는  
경우 -----  
-----.

<삭 제>

<삭 제>

제40조(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

상금 지급) <신 설>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무단투기행위인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행위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강남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내역은 별지 제9호 서식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은 별표9와 따른다.

②·③ (생략)

상) ① 무단투기행위 신고자는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무단투기행위인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히 적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단투기에 -----  
-----  
-----  
-----. <후단 삭제>

<삭 제>

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 포상기준 등)

① -----  
-----  
-----  
-----  
-----  
----- 별표 9를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미 처분한 사항 <본조 신설 2009.11.06.>

④ -----  
-----  
----- 않는다.

1. ~ 3. (현행과 같음)

4.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  
-----

# 신 · 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별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8조1항제1호 관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별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제8조1항제1호 관련)			
1호 관련)				1호 관련)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가 구 류	장롱	100cm이상	15,000	의 자	1인용		2,000
		100cm미만	10,000			장의자	3,000
	비키니 옷장	모든 규격	2,000		바퀴달린의자(대형)	5,000	
					바퀴달린의자(일반)	4,000	
	장식장	100cm 이상	9,000	화장 대	모든규격	5,000	
		100cm 미만	6,000				
	문갑	100cm 이상	4,000	신발 장	1m이상	5,000	
		100cm 미만	2,000		1m미만	2,000	
	서랍장	5단 이상	5,000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4단 이하	3,000		다림 이판	모든 규격	1,000
	쇼파	4인용 이상	10,000	오디오 장식장		모든 규격	3,000
		3인용	7,000		TV 받침	모든 규격	3,000
		2인용	5,000			발상	4인 이상
		1인용	3,000		3인 이하		1,000
	식탁 (데이 블)	4인용 이상	5,000	진열 대	모든 규격	3,000	
		3인용 이하	2,000		차탁 자	모든 규격	2,000
		5인용 이상 (대리석)	12,000	장문 짝		모든규격	2,000
		4인용 이하 (대리석)	8,000		문짝	목재류	3,000
	싱크대	60cm 1짝당	3,000	회의 용 탁자		12인용 이 상	9,000
		양수궤상	7,000		8인용 이상	7,000	
	책상	편수궤상	4,000	8인용 미만	5,000		
		컴퓨터용 궤상, 서랍없음	3,000		냉장 고	양문형 냉 장고(700 L이상)	15,000
	책장	100cm 이상	8,000	양문형 냉 장고(600 L이상)		12,000	
		100cm 미만	5,000	500L이상		8,000	
	책꽂이	4단 이하	4,000	300L이상		6,000	
		2단 이하	2,000	300L미만	4,000		
	침대	2인용 세트 (매트리스1 개+틀)	15,000	김치냉 장고	130L 이 상	5,000	
			10,000		130L 미 만	3,000	
		2인용(매트 리스)	8,000	텔레 비전	42인치 이 상	7,000	
			5,000		25인치 이 상	5,000	
유아용 침대		3,000	25인치 미 만		3,000		
		20,000	TV받침일 체형(40인 치 미만)		7,000		
2인용 돌침 대 세트		30,000	세 탁	10kg 이상	5,000		
		25,000		10kg 미만	3,000		
가 구 류				가 구 류			
가 구 류	장롱	100cm이상	15,000	의 자	1인용		2,000
		100cm미만	10,000			장의자	3,000
		비키 니 옷장	모든 규격		2,000	바퀴달린의자(대형)	5,000
					바퀴달린의자(일반)	4,000	
	장식 장	100cm 이상	9,000	화장 대	모든규격	5,000	
		100cm 미만	6,000				
	문갑	100cm 이상	4,000	신발 장	1m이상	5,000	
		100cm 미만	2,000		1m미만	2,000	
	서랍 장	5단 이상	5,000	옷걸이	모든 규격	2,000	
		4단 이하	3,000		다림이 판	모든 규격	1,000
	쇼파	4인용 이상	10,000	오디오 장식장		모든 규격	3,000
		3인용	7,000		TV 받침	모든 규격	3,000
		2인용	5,000			발상	4인 이상
		1인용	3,000		3인 이하		1,000
	식탁 (데이 블)	4인용 이상	5,000	진열 대	모든 규격	3,000	
		3인용 이하	2,000		차탁 자	모든 규격	2,000
		5인용 이상 (대리석)	12,000	장문 짝		모든규격	2,000
		4인용 이하 (대리석)	8,000		문짝	목재류	3,000
	싱크 대	60cm 1짝당	3,000	회의 용 탁자		12인용 이 상	9,000
		양수궤상	7,000		8인용 이상	7,000	
	책상	편수궤상	4,000	8인용 미만	5,000		
		컴퓨터용 궤상, 서랍없음	3,000		냉장 고	양문형 냉 장고(700 L이상)	15,000
	책장	100cm 이상	8,000	양문형 냉 장고(600 L이상)		12,000	
		100cm 미만	5,000	500L이상		8,000	
	책꽂이	4단 이하	4,000	300L이상		6,000	
		2단 이하	2,000	300L미만	4,000		
	침대	2인용 세트 (매트리스1 개+틀)	15,000	김치냉 장고	130L 이 상	5,000	
			10,000		130L 미 만	3,000	
		2인용(매트 리스)	8,000	텔레 비전	42인치 이 상	7,000	
			5,000		25인치 이 상	5,000	
유아용 침대		3,000	25인치 미 만		3,000		
		20,000	TV받침일 체형(40인 치 미만)		7,000		
2인용 돌침 대 세트		30,000	세 탁	10kg 이상	5,000		
		25,000		10kg 미만	3,000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가전 제품류	가오렌지	높이 1m 이상	5,000	기타 생활 용품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오오	본체(높이 1m 이상)	5,000		욕조	일반용	5,000
		스피커(높이 1m 이상)	1,000			유아용	3,000
	에컨	264㎡이상	8,000		유리(거울,편유리)	1㎡당	2,000
		66㎡이상	5,000		기타 목재	5kg 당	2,000
		66㎡미만	3,000		기타 프라스틱류	5kg 당	2,000
	은기	264㎡이상	8,000		화분	높이 50cm이상	2,000
		66㎡이상	5,000			높이 50cm미만	1,000
		66㎡미만	3,000		유모차(보행)	모든규격	3,000
	공정기	높이 1m 이상	5,000		인형,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	2,000
	난로	석유난로	3,000			소형(3kg당)	1,000
	경기	높이 1m 이상	5,000		자전거	성인용	3,000
	보러	16,000cal/h 이상	12,000			아동용(2륜)	3,000
		16,000cal/h 미만	8,000			아동용(3륜)	2,000
	자판기	음료, 담배 등	15,000		항아리	100 L 이상 (대형)	5,000
		자가, 소형	3,000			100 L 미만 (중형)	3,000
	선기	업소용(대형)	3,000		30L 미만(소형)	30L 미만(소형)	2,000
	판기	업소용	3,000			칼포 가방	3,000
		가정용	2,000		가로 이상	3,000	
	기타 생활 용품	피노	일반		15,000	가방류	가로 50cm 미만
디지털(오르간 포함)			5,000	가로 50cm 이상	2,000		
샬레		모든규격	3,000	쓰레기통	사무실용, 옥외용	2,000	
		높이 1m 이상	3,000		가정용	1,000	
액자		높이 50cm~1m	2,000	목욕탕 수건함	모든 규격	1,000	
		높이 50cm 미만	1,000	재봉틀	모든 규격	2,000	
시저		높이 1m 이상	3,000	고무통	지름100cm이상	5,000	
장척		3.3㎡당	2,000		지름50cm이상	3,000	
		3.3㎡당	2,000	지름50cm미만	2,000		
카트		3.3㎡당	2,000	병풍	2족당	1,000	
이불		모든규격	2,000	러닝머신	모든 규격	10,000	
캐넷		모든규격	4,000	탈레건조대	모든 규격	2,000	
화캐넷		4단 이상	4,000	욕매트	2인용	7,000	
		4단 미만	3,000		1인용	4,000	
어형		2m 이상	9,000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1m 이상	5,000	아이스박스	대형	2,000	
		1m 미만	3,000	소형	1,000		
변기		양변기	8,000	스키보드	모든 규격	2,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20,000	
				소화기	3.3kg이하	1,000	
	3.3kg~5kg	2,000					
	5kg~10kg	3,000					
	10kg~15kg	4,000					
	좌변기	5,000	15kg이상	5,000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종류	품목	규격	수수료
가전 제품류	가오렌지	높이 1m 이상	5,000	기타 생활 용품	세면대	모든 규격	3,000
	오오	본체(높이 1m 이상)	5,000		욕조	일반용	5,000
		스피커(높이 1m 이상)	1,000			유아용	3,000
	에컨	264㎡이상	8,000		유리(거울,편유리)	1㎡당	2,000
		66㎡이상	5,000		기타 목재	5kg 당	2,000
		66㎡미만	3,000		기타 프라스틱류	5kg 당	2,000
	은기	264㎡이상	8,000		화분	높이 50cm이상	2,000
		66㎡이상	5,000			높이 50cm미만	1,000
		66㎡미만	3,000		유모차(보행)	모든규격	3,000
	공정기	높이 1m 이상	5,000		인형, 장난감류	대형(미끄럼틀, 놀이집 등)	2,000
	난로	석유난로	3,000			소형(3kg당)	1,000
	경기	높이 1m 이상	5,000		자전거	성인용	3,000
	보러	16,000ca/h 이상	12,000			아동용(2륜)	3,000
		16,000ca/h 미만	8,000			아동용(3륜)	2,000
	자판기	음료, 담배 등	15,000		항아리	100 L 이상 (대형)	5,000
		자가, 소형	3,000			100 L 미만 (중형)	3,000
	선기	업소용(대형)	3,000		30L 미만(소형)	30L 미만(소형)	2,000
	환기	업소용	3,000			칼포 가방	3,000
		가정용	2,000		가로 이상	3,000	
	기타 생활 용품	피노	일반		15,000	가방류	가로 50cm 미만
디지털(오르간 포함)			5,000	가로 50cm 이상	2,000		
샬레		모든규격	3,000	쓰레기통	사무실용, 옥외용	2,000	
		높이 1m 이상	3,000		가정용	1,000	
액자		높이 50cm~1m	2,000	목욕탕 수건함	모든 규격	1,000	
		높이 50cm 미만	1,000	재봉틀	모든 규격	2,000	
시저		높이 1m 이상	3,000	고무통	지름100cm이상	5,000	
장판		3.3㎡당	2,000		지름50cm이상	3,000	
		3.3㎡당	2,000	지름50cm미만	2,000		
카트		3.3㎡당	2,000	병풍	2족당	1,000	
이불		모든규격	2,000	러닝머신	모든 규격	10,000	
캐넷		모든규격	4,000	탈레건조대	모든 규격	2,000	
화캐넷		4단 이상	4,000	욕매트	2인용	7,000	
		4단 미만	3,000		1인용	4,000	
어형		2m 이상	9,000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1m 이상	5,000	아이스박스	대형	2,000	
		1m 미만	3,000	소형	1,000		
변기		양변기	8,000	스키보드	모든 규격	2,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20,000	
				소화기	3.3kg이하	1,000	
	3.3kg~5kg	2,000					
	5kg~10kg	3,000					
	10kg~15kg	4,000					
	좌변기	5,000	15kg이상	5,000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3.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li> <li>▷ 뚜껑은 재질에 따라 배출</li> </ul>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위험이 높은 제품으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따로 모아 배출</li> </ul>
4. 고압류	공구, 절사, 못, 전선, 알루미늄, 스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따로 모아서 배출</li> </ul>
5. 유리류	음료수병, 기타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병뚜껑은 재질 따라 분리 배출</li> <li>※ 소주병, 맥주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빈용기 보증금제도 이용</li> </ul>
6.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지를 제거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li> </ul>
	그 외 플라스틱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이 묻지 않은 상태로 배출</li> </ul>
7. 스티로폼류	페스티로폼,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테이프 등)을 제거 후 배출</li> <li>▷ 스티로폼 재질의 컵라면 용기 배출시에는 물로 헹군 후 배출</li> </ul>
8. 비닐류	과자·라면 봉지, 커피믹스, 가정용 고무장갑, 1회용 비닐 봉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모아 배출</li> <li>▷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li> <li>▷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li> </ul>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2. 골판지의 종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li> <li>-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li> <li>-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li> </ul>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li> <li>-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li> </ul>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li> </ul>
	· 종이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li> <li>※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li> <li>-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1회용컵은 보증금대상사업자매장, 무인회수기 등 반납처에 반납시 보증금 환급</li> <li>※내용물을 비우고 뚜껑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물로 헹군 후 반납</li> </ul>
	· 기타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li> <li>※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맥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li> </ul>
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담배공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li> <li>-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li> <li>-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li> <li>-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li> <li>※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li> </ul>

4. 금속캔	· 음료· 주류캔, 식료품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ul> <p>※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p>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li> </ul> <p>※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p> <p>※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p> <p>※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p> <p>※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합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p>
5. 무색 폴리메탈테레프탈레이트 (PET) 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달아 배출</li> <li>-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li> </ul> <p>※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p>
6. 합성수지 용기· 트레이류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 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 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ul> <p>※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li> </ul> <p>※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p> <p>※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p>
7.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li> </ul> <p>※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p> <p>※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sup>2</sup>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p>

		<p>※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p>
8.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p>-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p> <p>-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p> <p>-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p> <p>※해당 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p> <p>※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p>
9. 의류 및 원도류	<p>· 면의류</p> <p>· 기타의류</p> <p>· 식물성 섬유 (면, 마 등)</p> <p>· 동물성 섬유 (울, 모직 등)</p> <p>· 합성섬유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p> <p>· 기타 합성섬유류</p>	<p>-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p> <p>※비해당품목 : 솜이불, 베개, 쿠션,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 재사용불가한 헌옷·헌신발·헌가방 등</p>
10. 전지류	<p>·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p>	<p>-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p> <p>-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p> <p>-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p>
11. 형광등	<p>· 직관형(FL), 환형(FCL), 안경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p>	<p>- 주요 거점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배출</p> <p>※비해당품목 : 개진 형광등, 개진 LED 조명 등)</p>
12. 고철류	<p>·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p> <p>·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p>	<p>-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p>
13. 식용유	· 폐식용유	<p>-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전용수거함에 배출</p>

※ 품목별 비해당 품목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등 적합한 방법으로 배출

[별표 6]



<삭 제>

[별표 7]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종 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단위 : 원)	비 고
사 업 장 폐 기 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② 2,3호 자가, 신고(다량)	당 20,916	
	건설 폐 기 물	당 14,470	

<삭 제>

- 비고 : 1.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하는 반입료 등이 변동될 경우에는 그 변동 비율에 따라 가감함
2. 법 제15조제1항, 법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수도권매립지에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계량한 중량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한 반입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 4. 작성자

- 자원순환과 행정7급 이지영(02-3423-5974)